

영등포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신홍식 의원 대표발의】



2014. 4. 1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96호로 2014년 4월 8일 신흥식 의원외 4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단체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2조)
- 바.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 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5조)
- 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시책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제20조)
- 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 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합 의 :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한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일원화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칙 24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 등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 그동안 개별 조례에 따라 각각 시행하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합·운영하여 행정의 일원화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 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 참고로 2013년 1월 1일 기준 경제활동 등으로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53,555명, 결혼이민자는 2,889명, 다문화자녀는 2,176명임. 【붙임 외국인주민 현황 참조】

【별 첨】

외국인주민 현황 (2013. 1. 1현재)

□ 동별 현황

(단위 : 명)

영등포동	영등포동	여의동	당신동	당신동	도림동	문래동	양천동	양천동
4,240 (25,193/16.8%)	1,776 (19,518/9%)	1,283 (33,821/3.8%)	888 (20,716/4.3%)	805 (34,021/2.4%)	4,694 (18,666/25.1%)	530 (32,465/1.0%)	612 (17,272/3.5%)	586 (22,123/2.6%)
산림동	산림동	산림동	산림동	산림동	산림동	대림동	대림동	대림동
4,536 (20,748/21.9%)	1,748 (16,719/10.5%)	1,975 (12,721/15.6%)	4,607 (16,528/27.9%)	2,558 (23,193/11%)	669 (15,445/4.3%)	5,058 (16,541/30.6%)	11,697 (17,460/67%)	5,394 (28,258/19%)
총 계					53,666 (391,408/13.7%)			

※ 외국인주민이란 ①국적미취득자(외국국적) + ②국적취득자(한국국적) + ③외국인주민 자녀(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를 말함.

※ 아래 괄호는 주민등록인구수 및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외국인주민의 비율임.

□ 유형별 현황

계	국적미취득자(외국국적)					국적취득자(한국국적)		자녀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혼인귀화	기타	
53,666	22,233 (41.4%)	2,889 (5.4%)	292 (0.6%)	9,392 (17.5%)	10,054 (18.7%)	2,133 (4%)	4,497 (8.4%)	2,176 (4%)

□ 국적별 현황

계	중국 (한국계)	중국	미국	타이완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기타
53,666	45,933 (85.6%)	3,677 (6.9%)	1,239 (2.3%)	464 (0.9%)	435 (0.8%)	218 (0.4%)	173 (0.3%)	81 (0.1%)	1,446 (2.7%)

□ 국적미취득자 중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미국	몽골	타이완	기타
2,889	1,776	611	193	71	43	39	11	8	137